

『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고대 신라 불교전래 역사현장을 전승·보전하고 불교문화의 전시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첨단기술과 역사문화가 융합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재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[안전]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사업

- 토 지 (취득)
 - 면 적 : 31,444m²(답,19필지)
 - 예정가격 : 1,163,428천원(가감정가)
- 건 물 (신축)
 - 면 적 : 2,300m²(3동)
 - 예정가격 : 12,350,000천원(공사금액 기준)
- 편 의 시 설 (신축)
 - 면 적 : 1,100m²
 - 예정가격 : 540,000천원(공사금액 기준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계획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 취득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신라불교문화 초전지조성사업 대상 부지 도개면 도개리 364번지 외 18필지 31,444㎡를 취득하고, 불교문화체험관 800㎡, 불교문화스토리텔링관 1,000㎡, 불교문화역사관 500㎡과 편의시설 1,100㎡를 신축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사업은 구미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시 기반이 되는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위 사업은 2011. 8. 31. 국·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사항으로 올해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, 2011년 추경예산에 7억 1천 7백만원, 2012년 당초예산에 40억 4천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음.
-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, 용도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절차 이행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